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634
----------	------

2026년 4월 22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4월 6일, 최재란 의원
2. 회부일자 : 2026년 4월 7일
3. 상정일자 :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4월 22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재란 의원)

1. 제안이유

- 지난 2025년 9월 16일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 사항이 자치법규에 위임됨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위원 정수 구성 비율을 개정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온라인학교 운영위원회의 정수 규정 명시함(안 제3조제1항).
2. 온라인학교 위원 구성 비율 범위 명시함(안 제3조제4항 신설).

.

I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4월 6일 최재란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634호로 발의되어 2026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온라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됨.

2. 주요 검토의견

1)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안 제3조제1항)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제1항은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온라인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학교 규정으로 위임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 것임.
- 온라인학교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¹⁾ 추진에 있어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²⁾로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2월에 덕수고 이전 적지에 온라인학교 설립 계획을 마련하고³⁾, 2024년 리모델링 등의 공사 과정을 거쳐 2025년 3월 1일에 ‘서울온라인학교’를 개교·운영하고 있음.

1)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써, 2020년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도입한 이후 2022년부터 일반고에 단계적으로 학점제가 적용되었고,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5.).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국정과제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및 안착 지원

-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고교’ 신설 추진

3)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2023.12.). ‘(가칭) 서울통합온라인학교 설립 기본 계획(안).’

- 이와 같은 온라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에 따른⁴⁾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법상 온라인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⁵⁾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온라인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온라인학교 규정’)에서는 온라인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원 수 및 과목 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⁶⁾되어 있음.

- 따라서 안 제3조제1항 단서는 온라인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재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 체계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2)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안 제3조제4항)에 대한 검토

- 다음으로 안 제3조제4항은 온라인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시 학부모 위원은 100분의 0 이상 100분의 20 이하, 교원위원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이하, 지역위원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우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회 구성 비율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과 온라인학교 규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⁷⁾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제안일자: 2024.9.27., 의결일자: 2025.2.27., 수정가결]

5) 「초·중등교육법」[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7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60조의4(온라인학교) ① 생략

②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온라인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원 수 및 과목 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7) 「온라인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⑤ 생략

자체로 법적 정합성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학부모 위원’의 경우 ‘100분의 0이상 100분의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학교 규정⁸⁾ 및 수강 학생만으로 구성되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부모 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 비율을 0으로 규정하는 점은 타당성이 인정됨.
- 그러나 학부모 위원의 최대 비율을 100분의 20 이하로 제한할 경우 위원 정수에 따라 학부모 위원 수가 1~3명 수준에 그치게 되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에 비해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음.
- 특히 이는 일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할 때 실질적인 참여 권한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학부모 위원의 대표성과 의결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율 상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1] 구성비율에 따른 최대인원수

구분	인원 비율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학부모	0%~20%	1	1.2	1.4	1.6	1.8	2	2.2	2.4	2.6
교원 지역	20%~60%	3	3.6	4.2	4.8	5.4	6	6.6	7.2	7.8	8.4	9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선출 방법, 임기 및 자격 상실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8) 「온라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온라인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온라인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학생 없이 과목별 수강학생만을 두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위원(수강학생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⑥ 생략

[표-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별 구성 현황

	2023년	2024년	2025년
학부모위원	6,624명	6,086명	6,507명
교원위원	5,140명	4,729명	5,085명
지역위원	2,708명	2,519명	2,695명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4618., 2026.4.13.).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로 한다”를 “수로 한다. 다만, 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경우 정수를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경우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0 이상 100분의 2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이하
3. 지역위원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이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